

제22호 2026. 6. 4.(목)

고 시

광양시 고시 제137호
광양시 고시 제138호
광양시 고시 제142호
광양시 고시 제143호
광양시 고시 제144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1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폐지 고시 3
광양시 도로구간(1차 종속도로) 연장 고시 5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폐지 고시 6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8

공 고

광양시 공고 제1260호
광양시 공고 제1296호
광양시 공고 제1311호
광양시 공고 제1324호

광양시 공고 제1329호
광양시 공고 제1341호

광양시 공고 제1342호

공시송달공고 10
공시송달공고 13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5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 강제처리(견인) 및 인수통지 공시
송달 공고 17
광양시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폐지규정안 입법예고 19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21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
칙안 입법예고 23

회 람										
--------	--	--	--	--	--	--	--	--	--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5. 27.

광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구 분	고 시 대 상	고시조서	비 고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지원길 141-7 외 4건	별지참조	
	아 래 빈 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797-338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5. 2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및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고시 대상

연번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 사유
계	건 물 번 호 부 여 5 건					
1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지원리 1048-1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지원길 141-7	20260527	2008100 1	법정리명에서 인용
2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우산리 773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계곡길 254-6	20260527	2024121 8	행정리명에서 인용
3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비평리 1390-1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토끼재길 90	20260527	2008100 1	옛 지명에서 인용
4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금이리 44-35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내금길 183-20	20260527	2008100 1	행정리명에서 인용
5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어치리 134-3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백학로 533-3	20260527	2008100 1	백학동으로 가는 길에서 명명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 합니다.

〈폐지 내역〉

연번	폐지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 폐지 사유
1	전남 광양시 광양읍 시장길 16-4	2026. 5. 27.	건축물 멸실 (※상세내역 붙임참조)
	이 하 빈 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 797-338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6. 5. 27.

광 양 시 장



도로명주소 폐지 대상

연 번	업무 구분	도로명주소	건축물대장 말소일 (건축물멸실 확인일)	폐지 고시일	폐지 사유
1	건물번호 폐 지	광양시 광양읍 시장길 16-4	2026. 5. 14. (2026. 5. 26.)	2026. 5. 27.	건축물대장 말소 및 건축물 멸실



광양시 도로구간(1차 종속도로) 연장 고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 도로구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4일

광 양 시 장

1. 고 시 일: 2026. 6. 4.(목)
2. 고시방법: 시보, 시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도로구간(1차 종속도로) 연장(붙임조서 참조) 1건
4.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www.gwangyang.go.kr)를 참고하거나 광양시청 민원지적과(☎061-797-33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구간 연장 조서(도면 포함) 1부. 끝.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 합니다.

〈폐지 내역〉

연번	폐지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 폐지 사유
1	전남 광양시 광양읍 매천로 888	2026. 6. 4.	건축물 멸실 (※상세내역 붙임참조)
2	이 하 여 백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 797-338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6. 6. 4.

광 양 시 장



도로명주소 폐지 대상

연 번	업무 구분	도로명주소	건축물대장 말소일 (건축물멸실 확인일)	폐지 고시일	폐지 사유
1	건물번호 폐 지	광양시 광양읍 매천로 888	2026. 5. 14. (2026. 5. 26.)	2026. 6. 4.	건축물대장 말소 및 건축물 멸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6. 4.

광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구 분	고 시 대 상	고시조서	비 고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비촌수어길 256 외 3건	별지참조	
	아 래 빈 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797-338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6. 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및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 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 난 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고시 대상

연번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 사유
계	건 물 번 호 부 여 4 건					
1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비평리 산74-1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비촌수어길 256	20260604	2008100 1	비촌마을과 수어댐을 인용
2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성황동 1961-9	전라남도 광양시 지동4길 13 (성황동)	20260604	2021021 0	옛 마을이름에서 인용 및 일련번호식 부여
3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청암리 531-1, 531-2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청도길 96-2	20260604	2008100 1	행정리명에서 인용
4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688-6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시장길 16-4	20260604	2008100 1	광양읍 오일시장 인용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 미리 계고해야 하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6일

광 양 시 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① 2. 공고기간 : 2026. 5. 26. ~ 2026. 6. 9.(15일간)

② ③ 3. 공고장소 : 광양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④ 4. 공시송달 내용

- 가. 처분의 제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별첨] 참조
- 다. 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5. 유의사항

-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광양시 건축과(☎061)797-31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

건 축 주		위반건축물 현황		이행강제금(원)	반송 사유
성 명	주 소	대지위치	위반내용		
곽*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 ***_***	마동 1102-2번지	지상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41.04㎡ 무허가 증축 조경훼손 19.435㎡ 주차장 1면 무단용도변경	8,823,000원	수취인 불명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광양시청 건축과 건축지도팀

○ 연 락 처 : 061) 797-3181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수령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9일

광 양 시 장

1. 공 고 명 : 건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⑤ 2. 공고기간 : 2026. 5. 29. ~ 2026. 6. 12.(15일간)

⑦ 3. 공고장소 : 광양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⑧ 4. 공시송달 내용

- 가. 처분의 제목: 건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 나.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아래 참조
- 다. 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법」 제79조, 「행정절차법」 제21조

건 축 물 소 재 지	처 분 원 인 (위 반 내 용)	처분내용	처분 당사자	반 송 주 소	반송사유
광양시 중동 1576-1 번지	「건축법」 제14조 위반 가. 창고시설 컨테이너조 1층 18㎡	건축법 위반사항 원상회복 사전통지	설O중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남가1길 31	폐문 부재 등

5. 유의사항

-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광양시 건축과(☎061)797-31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3.

광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광양시 주차장 조례

2. 일부개정이유

- 「주차장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주차환경 개선대책 수립 및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철거 유도 통한 안전사고 예방
- 전라남도 조례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모범납세자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성실납세 의식 고취 및 출산장려 문화 조성 기여



3. 주요내용

- 모범납세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00% 면제 [안 제4조의2]
- 다자녀가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안 제4조의2]
- 「주차장법」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 [안 제5조]
 -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체계 정비(방법, 시기 등 세부사항 명시)
- 「주차장법」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 [안 제12조]
 - 기계식주차장 철거 후 재설치시 설치기준의 50% 적용

4. 예고기간 : 2026. 6. 3. ~ 2026. 6. 23.(20일간)

5.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양시장(참조 : 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 제출할 곳 : 광양시 교통과 교통시설팀

- 1) 전 화 : 061-797-2871
- 2) 팩 스 : 061-797-2591
- 3) 전자우편 : special9378@korea.kr

다. 의견 제출 방법 : 전자메일, 전화, 팩스

- 붙임 1.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의견서 1부.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 강제처리(견인) 및 인수통지 공시송달 공고

광양시 관내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8조의2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견인)하여 인수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6. 10. ~ 2026. 6. 24.(14일간)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견인장소 및 일시 : 붙임 참조
4. 보관장소 : 광양시 견인자동차 보관소(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3-4번지)
5. 그밖에 차를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1개월이상 장기방치
6. 공시송달내용
 - 가. 차량의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자진처리(이동 또는 폐차)하시기 바랍니다.
 - 나. 차량의 견인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때에는 차량을 매각 또는 폐차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광양시청 교통과 교통시설팀(☎ 061-797-2871)

2026년 6월 10일

광 양 시 장



<붙임>

공 고 대 상

연번	성명/상호	차량번호	주소	방치장소	비고
1	김*훈	20라4403	전라남도 영암군 서호면 성재길 *	광양시 중동 1851-2	
2	최*윤	82소4781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120번길 8-3, 20*호	광양시 중동 1660	
3	이*영	33누557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산북로 8*	광양시 중동 1660	
4	정*한	91고2858	전라남도 광양시 금영로 170, 5동 20*호	광양시 중동 1748	
5	(유)중*모터스	64고4894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죽엽산로 16-2*	광양시 중동 1660	
6	황*은	85노3738	전라남도 광양시 강변로 17*	광양시 중동 1660	
7	황*은	92소5775	전라남도 광양시 강변로 17*	광양시 중동 1660	
8	정*기	72수7871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백암길 79-*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746	
9	MAMU*OV ALI*EK	28머6916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로 62, 20*호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690-1	
10	주-두*성	01거3059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72*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670-1	
11	(주)성*물산	16노2857	경기도 광주시 능평로 211-1*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667	



광양시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폐지규정안 입법예고

「광양시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4일

광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광양시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

1. 폐지 이유

- 협업포인트 제도는 행정안전부 권고로 부서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2019년 이후 행정안전부 차원의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어 참여도와 실효성이 낮아 「광양시 협업포인트 운영규정」은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광양시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폐지

3.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6. 6. 4. ~ 24.(20일간)

○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4. 의견 제출

○ 「광양시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 폐지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후 광양시장(기획예산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 제출기한: 2026년 6월 24일까지

○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 제출기관: 광양시 기획예산실

- 주 소: (57785)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 전 화: 061-797-3218

- 전자메일: eunil2@korea.kr

- 팩 스: 061-797-2574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폐지규정안(광양시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 1부. 끝.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일

광 양 시 장

1. 개정이유

「도서관법」등 상위법령과 정부합동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와 시행규칙이 혼재된 내용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일관성과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시장의 책무 조문 신설(안 제4조)

나.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조문 신설(안 제10조)

다. 조문 내 세부 운영 조항 규칙 위임 명시(안 제13조, 제15조)

라. 소비자 권익 제한 규제 개선사항 조항 신설(안 제16조)

마. 위촉직 위원 자격 기준 구체화(안 제19조)

바. 조문 분야별로 분류 및 순서 변경, 문장어법·용어 등 정비사항 반영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6. 2. ~ 6. 22.(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4. 전부개정 조례안: 붙임

5.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2일
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도서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1) 주소: 우)57734 광양시 광양읍 향교길 9-30 광양시립도서관

2) 전화: 061-797-3850 / 팩스: 061-797-4154

3) 전자우편: atom1220@korea.kr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끝.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일

광 양 시 장

1. 개정이유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현행 규정을 정비하여 법적 정합성과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자료실에서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열람실 정의 규정 삭제
(안 제2조제5호)

나. 「도서관법 시행령」을 반영한 조례 개정사항에 맞춰 불필요한 조문 삭제
(안 제14조)

다. 조례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규칙 조문 및 별지 서식 신설 (안 제15조~제17조, 별지 제1호~제2호서식)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6. 2. ~ 6. 22.(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4. 일부개정 시행규칙안: 붙임

5. 의견 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2일 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도서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 1) 주소: 우)57734 광양시 광양읍 향교길 9-30 광양시립도서관
- 2) 전화: 061-797-3850 / 팩스: 061-797-4154
- 3) 전자우편: atom1220@korea.kr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 1부. 끝.

